제 5 장　외국인투자정책

제 1 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투자정책과 사무관 김완기

1. 최근 동향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차관 및 기술도입 형태로 조달하는 외자도입정책에 주력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의 외환위기는 정부로 하여금 그동안의 자본 및 기술조달방식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이전의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 유치정책의 추진 결과 '62년 이래 전체 유치실적인 512억불(도착기준)의 68.2%인 349억불을 '98～'02년동안 유치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세계경기 침체 및 대형 M&A 물량의 감소로 '00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두 차례의 토론 국무회의(4.22, 7.1)를 거쳐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확정(9.2)하였다.

2.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은 세제와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의 확충, 외국기업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책, 외국 투자가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은 조세감면의 수혜대상 확대, 무상에 가까운 입지 공급 확대 및 현금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연차별 경영환경개선계획의 수립·추진, 금융·외환 분야의 당면 애로사항 해소 및 외투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노사상담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의 수립·추진, 외국인학교 확충사업 중점 추진 및 「Invest KOREA Plaza」 건립을 통한 외국인 생활환경의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실효성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인·허가 신속처리규정의 이행 및 외국인투자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일선행정기관의 신속한 투자유치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그간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해 온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여 Invest KOREA로 재출범하고 투자정보 및 통계를 집중관리함으로써 Invest KOREA의 투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대통령의 국내외 행사를 외국인 투자유치와 연결함으로써 대통령이 강력한 투자유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고, 부처별로 중점유치 대상분야를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 참여를 독려하며, 현지의 인적네트워크 보강 및 투자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등 고객지향적 마켓팅 전략을 전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과제

우리경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등의 당면과제와 동북아경제중심의 실현, 차세대성장동력의 확충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등의 중장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04년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외국인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중국, 싱가폴 등 유치경쟁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노사관계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정부는 2003년을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로 삼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환경 개선계획을 확정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 2004년에는 기확충한 투자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증가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즉 국내외 경기회복, LCD 등 차세대 디지털전자시장에서의 선두 부상 등을 구체적인 투자실적으로 연결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연내 성사를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1:1 밀착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성과지향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용산외국인학교, 출입국관리 개선 등 시급한 과제의 우선 해결을 통한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셋째, Invest KOREA 중심으로 범정부적 투자유치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2 절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운용

투자정책과 사무관 박상희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배경

정부는 '98년 11월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을 시작으로, 수요자인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투자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2003년도에도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경쟁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그 밖에 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Cash Grant의 도입(법 제14조의 2)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지원제도는 법령에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외국투자가에는 "기본적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투자가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Cash Grant 제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지원 여부와 수준에 관한 협상력(leverage power)을 부여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직접적인 투자 유치 유인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임금, 고지가 등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투자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투자유치 경쟁국들에서도 Cash grant 제도를 주요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기업들도 해외 진출시 수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위의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반영되어 외국인투자가와의 협상에 의해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 중 일정

금액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다만 모든 외국인투자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기술수반여부·기술이전효과·고용창출규모·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및 입지 여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 개선(영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입주를 지원하고, 관련 조세 면제에 각종 정부 지원금을 수혜받는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한 수단이나, 그 지정요건이 높아서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표 III-5-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 변경

업 종	현 행	개 정
제조업	5천만불(공단 3천만불)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리조트 3천만불)	2천만불
물류업	3천만불	1천만불
R&D	5백만불	5백만불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인 물류업의 범위에 항공 물류사업(공항시설 운영사업 및 공항구역내 물류사업)을 포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아웃소싱 활성화 등 고용구조 변화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지역 요건에서 과거의 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금액 기준으로 단일화하였다.

이 밖에 2이상의 외국투자가의 투자시 유사 업종 제한을 삭제하여 외투지역 내 제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업, 관광업 및 R&D 센터의 공동 투자 허용으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입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국내의 높은 땅값으로 인해 외국인을 위한 학교, 의료기관 등 기초적인 생활환경이 충분하지 못해 외국인투자유치 및 외국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입지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환경시설 운영자에도 제공하여 기초적인 외국인 생활환경의 개선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재정지원을 외국인을 위한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도 허용하고,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임대료 감면, 매입대금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기간도 50년까지 연장하였다. 법령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은 외국인학교, 약국, 주택 및 창업보육시설 등이고, 이 경우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임대되는 국가소유의 토지 등은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임대료 감면율(100분의 100)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외국인투자 유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법 제14조의3)

외국인투자 유치는 법과 제도, 시장 여건 등 외적 변수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러한 외적 변수는 그 제도의 마련과 개선이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실제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공식적·비공식적 접촉을 하는 공무원들의 투자유치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열성과 적극적 참여는 투자유치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현재까지 다소 간과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자체 및 민간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PM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신설하였다. 동 포상금은 외국인투자 유치유공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혜대상은 지자체 공무원, Invest KOREA의 PM(Project Manager), 민간기관 종사자 등이 되는데, 자세한 지급 절차 및 규모 등에 대한 상세 기준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마. 프로젝트매니저(PM)제도의 도입(영 제21조의4)

정부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매니저 제도를 마련하였다.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프로젝트의 일정, 진행사항, 인력, 기타 필요사항 등을 체크하고 프로젝트의 최종 완료까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외국인투자 유치에서도 PM은 외국투자가가 요구하는 정보 수집·제공 및 면담알선,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지원과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외국인투자가 및 임직원과 가족의 국내생활 정착지원, 외국인투자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바. 기타 개정 사항

그 밖에 외국인투자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들을 법령 개정시에 추가하였다. 먼저, 출자목적물의 유입이 없는 회사설립 방식의 신고대상은 과거 합병시에만 신고토록 하였으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법 제7조제1항제2호) 하여 외국인투자 신고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이외에 이전에는 신주취득에만 인정되고 있는 분할납부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구주취득의 경우도 허용(법 제21조제2항)하여, 외국인이 비자신청, 대외송금 및 부동산 취득 등의 업무 처리시 편의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이전에는 외국투자가에 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투자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영 제27조)하여 수명의 외국투자가가 동시에 있거나 외국투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록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3.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하여 1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실무적 사안처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은 산업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3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중 외국인투자위원회는 4차례 개최하여 2003년도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종합대책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표 III-5-2>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실적

개최일시	심의안건(안건제출자)
'98.11.25	· 고도기술 범위조정안(재경부)
'98.12.23	· 해외현지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기준(재경부)
'99. 3. 2	·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제정안(재경부), · 위원회운영규정제정안(재경부)
'99. 7.14	· 외국인투자위원회운영규정개정안(재경부)
'99.10.19	· KISC 개편안(산자부) ·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투자지역지정안(충남)
'99.10.28	· 경남태양유전 투자지역지정안(경남)
'00. 3. 3	· 외국인투자지역지정지침제정안(산자부)
'00. 3.14	· 경남양산J.S.T 투자지역지정안(경남)
'00.10. 7	· 외촉법개정안(산자부), · 재정자금지원기준개편안(산자부), · 전북울트라텍투자지역지정안(전북)
'00.12.26	· 재정자금지원기준개편안(산자부), · 코리아오토글라스 투자지역 지정안(충남) · 한국바스프 투자지역지정안(울산, 전북, 전남)
'01. 3.16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위촉 제청(산자부)
'01. 6.13	· 외국인투자위원회운영규정개정안(재경부),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산자부), ·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산자부), · 동부전자 외국인투자지역지정안(충북)
'01. 9.26	·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변경(충남)
'02. 1.10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산자부), · 재정자금지원기준개정(산자부),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조직개편(KOTRA)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개정(재경부)
'02. 5.30	· BAT코리아제조(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경남) · 한국바스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변경(전북) · 지자체 투자유치활동 예산의 인센티브 지원계획(산자부)

개최일시	심의안건(안건제출자)
'02.11.20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위촉(산자부)
'03. 1. 8	·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개정(산자부), · 외국인학교 지원계획(산자부)
'03. 3.31	· 2003년도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종합대책(산자부)
'03. 7. 5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개정고시(재경부)
'03.12. 5	· 다임러현대상용차(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전라북도), · 동우STI(주) 및 동우광학필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경기도) · (주)울트라텍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전라북도) · 경남 국제외국인학교 지원계획(산자부) · 용산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계획(산자부, 서울시)

제3 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정책과 사무관 여영섭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투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다.

인센티브의 제공방법은 주로 조세지원, 재정지원 등의 방법이 있는데, 조세지원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제공수준이 사후적으로 결정되므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유리하며, 재정지원

은 강력한 투자유인효과가 있고 투자진출 초기에 지급규모가 결정되므로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수단으로 적합하다.

1. 조세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데, 헝가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지, 자금 등의 차원에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1996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유해조세 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움직임이 있으며(현재 금융부문 및 서비스부문에 한정),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지원 및 부지무상제공 등의 직접 재정지원 및 인프라 조성 등의 간접 재정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조세지원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사용기술에 대한 조세지원 등으로 그 대상을 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III-5-3>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사업	조세감면 요건	조세감면 방법
1.고도기술수반사업(485개) 및 산업지원서비스업(149개): 총634개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최초 도입일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 경과 기술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성능이 뛰어난 것	○국세(법인세, 소득세) 감면 - 10년간(7년이내 100%, 3년이내 50%)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8년간(5년이내 100%, 3년이내 50%)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 ※ 99. 5. 24이전 설치 수출자유지역 포함	○제 조 업 : 3천만$이상 투자 ○관 광 업 : 2천만$이상 투자 ○물류사업 : 1천만$이상 투자 ○연구시설 : 5백만$이상 투자 ※수출자유지역은 투자규모제한 없음	*2005.1월부터 7년간감면 (5년 100%, 2년 50%) *지방세는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율 및 기간을 15년 범위내에서 각각 조정 가능
3.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제 조 업 : 1천만$이상 투자 ○관 광 업 : 1천만$이상 투자 ○물류사업 : 5백만$이상 투자	○국세(법인세, 소득세) 감면 - 5년간(3년이내 100%, 2년이내 50%)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5년간(3년이내 100%, 2년이내 50%) *지방세는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율 및 기간을 15년 범위내에서 각각 조정 가능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 외투기업	○투자금액이 3천만$ 이상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총 개발사업비가 5억$이상인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외투기업	○투자금액이 1천만$ 이상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고 총 개발사업비가 1억$ 이상인 경우	
6.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외투기업	○제조업 : 1천만$ 이상 ○물류업 : 5백만$ 이상	

<표 III-5-4>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요건	조세감면 방법
1. 고도기술수반사업(485개) 및 산업지원서비스업(149개) : 총634개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직접 출자받은 대외·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내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	○관세,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3.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 외투기업 5.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외투기업 6.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직접 출자받은 대외·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법인세, 소득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	○관세 면제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반입외국물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며, 반입내국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

2. 현금지원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탄력적인 유치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프로젝트는 첫째,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의 신·증설, 둘째,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일정한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시설의 신·증설, 셋째,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서 투자금액이 5백만불 이상이며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

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인 연구시설의 신·증설이다. 단, 외국인투자비율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금지원을 결정하는 주요절차는 먼저 산업자원부의 담당공무원과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대상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한 후, 투자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평가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시 사용하는 평가기준은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 등이다. 평가를 마친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은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자부장관은 동건의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현금지원여부 및 금액은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한다. 지원을 받는 투자가는 지원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사업을 영위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재정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신규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로 하고 있으며, 증설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더한 금액의 25% 범위(전체금액중 FDI가 25%이상 차지해야 함)중에서 큰 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표 III-5-5> 재정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2.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3. 외국인투자지역 Infra 조성 지원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지원
4.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4.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요건 충족시 국·공유재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최고 100%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매입비의 분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40%, 지자체 60%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 75%, 지자체 25%로 정하고 있다. 국·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차액보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부지매입비율과 동일하다. 또한, 투자기업이 임대부지활용보다 부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차액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전하고 있다.

<table>
<tr><th>지 원 대 상</th><th colspan="3">지 원 내 용</th></tr>
<tr><td>1. 임대용지 지원
가. 용지매입</td><td colspan="3">○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부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td></tr>
<tr><td>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td><td>감면 대상</td><td colspan="2">감면내용</td></tr>
<tr><td rowspan="6">*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td><td>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체</td><td colspan="2">100% 감면</td></tr>
<tr><td rowspan="3">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td><td>외국인기업 전용단지</td><td>100%</td></tr>
<tr><td>국가산업단지</td><td>50%</td></tr>
<tr><td>지방산업단지</td><td>50%</td></tr>
<tr><td rowspan="3">5백만불이상 제조업</td><td>외국인기업 전용단지</td><td>75%</td></tr>
<tr><td>국가산업단지</td><td>50%</td></tr>
<tr><td>지방산업단지</td><td>50%</td></tr>
<tr><td colspan="3">※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td></tr>
<tr><td>2. 임대료 보조</td><td colspan="3">○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td></tr>
<tr><td>3. 분양가 차액 보조</td><td colspan="3">○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td></tr>
</table>

임대부지 제공을 위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제공하고 있고, 경남지역에서 개별 기업의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임대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I-5-6>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현황

구 분	천 안	평 동	대 불	구미	오창	진사
소재지	충남 천안	광주시	전남 영암	경북 구미	충북 청원	경남 사천
지정 일자	'94.10.13 최초 '99.11.20 확장	'94.10.13 최초 '99.11.20 확장 '01. 8.17 확장	'98. 8.29 최초 '01. 8.17 확장	'02.11. 6 최초	'02.11. 6 최초 '03.11.28 확장	'01. 8.17 최초 '02.11. 6 확장 '03.11.28 확장
면적 (천평)	149	290	488	51	150	150
임대료	400원/평/월	132원/평/월	89원/평/월	301원/평/월	370원/평/월	284원/평/월

<표 III-5-7>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구 분	추팔단지	어연한산 단 지	포승단지	현곡단지	날코코리아	EEW성화
소 재 지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남 양산	경남 사천
매입계약일	'00.12.12	'02. 3.29	'03. 5.13	'04. 5.19	'99.12. 6	'00.12.21
면적(천평)	27	290	488	51	9	13

<표 III-5-8>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구 분	한국경남태양유전	충남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J.S.T.	BASF	코리아오토글래스	동부전자	다임러현대상용차	동우STI, 동우광학필름	S-LCD
위 치	경남 사천	충남 천안	경남 양산	전남여천 전북군산 울산	충남 연기	충북 음성	전북 완주	경기 평택	충남 아산
면 적 (천평)	52	150	6	203	58	45	80	31	112
지정일	'99.10.28	'99.11.2	'00.3.3	'00.12 '02.8.30	'00.12.30	'01.6.29	'03.12.12	'03.12.29	'04.5.25
투자가	태양유전	코아필름	J.S.T. Components Pte.Ltd	한국 BASF	코리아오토글라스	Toshiba	Daimler Chrysler AG	스미또모화학 New-STI Technology	SONY
투자액 (백만$)	209	46	32	233	70	240	62	158	923
사업 분야	세라믹 콘덴서	애니메이션	전기전자 접속부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비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상용차 엔진	LCD용 칼라필터 및 편광필림	LCD-TV용 패널

제 4 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투자정책과 사무관 김종주

1.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추진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센티브 개선과 더불어 경영·생활환경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매년도 투자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특히 '03년 9월에 수립된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에서는 연차별 투자환경 개선대책인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키로 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외투기업이 가장 시급히 느끼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쟁국 투자환경을 비교 조사하는 한편 '03.10-11월간 외국상의, 외투기업,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워킹그룹(WG)을 생활환경(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생활문화/통신 등 6개 WG), 경영환경(노동, 세제, 금융·외환, 행정절차 등 4개 WG)분야별로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산자부 주관으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 102개 세부과제, 재경부 주관으로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계획」 49개 세부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동북아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중장기대책"으로 확정하였다.

정부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151개 과제별로 코드화하여 분기별로 과제 이행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각 과제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개선과제 및 시급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2004년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례로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에 대해 장기체류자격 부여(법무부)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가사보조인이 매 3월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출국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안정적인 가사생활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재경부) 등 사업환경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매년도 하반기마다 신규 개선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이 "기업하

기 좋은 환경", "생활하기 편한 환경"이 되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I-5-9>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 주요 과제(예시)

분야	과 제 (예시)	담당
교육 (14건)	· 용산외국인학교 및 경남국제외국인학교설립 · 외국인학교 지원제도 개선(조세/입지) ·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규정 제정	산자/지자체 재경/산자 교육부
주거 (12건)	·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권장 · 외국인 주거정보센타 운영 · 외국인 이삿짐 통관제도 개선	건교/IK IK 관세청
의료 (10건)	· 외국인전용 Medical Hotline 개설 · 외국인진료병원 지정·운영	복지부 〃
교통 (23건)	· 외국인 교통안내 서비스 강화 · 대중교통 이용편의제고(예:영어 안내방송) · 도로표지판 외국어표기 정비 지속 추진	건교부/경찰청 건교/지자체 〃
출입국 (13건)	·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의 체류편의 제공 · 최초 비자신청 체류기간 연장 · 고액투자가 영주권 자동부여 · 외국인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	법무부 〃 〃 〃
문화/통신 (30건)	· 외국인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Invest KOREA Plaza 건립 · 신용카드/휴대폰 발급편의 제공 권장	정통부 산자부/IK IK/재경/정통

<표 III-5-10>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계획 주요 과제(예시)

분 야	과 제(예시)	담 당
노동 (16건)	· 불법행위 유발구조 개혁 ·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노동부 〃 보훈처
조세 (14건)	· 법인세율 인하 · 연결납세제도 도입 · 스톡옵션관련 세금부담 완화 · 영문상업송장의 세금계산서 인정	재경부 〃 〃 〃
금융·외환 (8건)	· 결산 상계절차 간소화 ·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연대보증제도 완화 ·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제도 개선	재경부 〃 재경/노동
기타 행정 절차(11건)	· 기업결합신고제도 개선 · 건축물 인허가 제도 개선 · 신규화학물질 수입제도 개선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권한 강화	공정위 건교부 환경부 국조실

2. 외국인학교 확충

가. 외국인학교 현황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기초교육인프라로서 투자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자녀의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02년 기준으로 홍콩 및 싱가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수가 각각 62개 및 26개교인 반면 '03. 10월 현재 서울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는 16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에는 43개의 인가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우수한 시설과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는 소수에 불과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요가

특정학교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더욱이 수도권 일부, 대전, 부산지역의 외국인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부지 및 시설이 취약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도 20여개로 실제 학교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의 규모 확대, 시설 개선,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외국인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더 이상 자녀교육문제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III-5-11>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03.10월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계
16	4	2	6	3	1	1	2	1	2	3	2	43

나. 외국인학교 지원

정부는 외국인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03.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학교 운영자를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로 포함해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재경부)해 비영리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 외국인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교육분야 과제로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규정」을 2004년에 제정(교육부)키로 해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 외국인학교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외국인학교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학교 수보다도 우수한 시설과 커리큐럼을 갖춘 외국인학교(Quality School)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 용산에 국제 수준의 외국인학교 건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상의, 국내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2006년 8월 개교를 예정으로 2004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에 건립되는 학교에는 영어, 독일어

등 각 언어권별 학교가 입주할 예정이며, IB프로그램, AP프로그램 등 우수한 학사프로그램도 운영해 시설과 학사 운영면에서 주변 경쟁국보다 우수한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 용산 외국인학교 건립개요>

◇ 건립주체 :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보광정수장
◇ 부지규모 : 시설면적 7,000평(총면적 24,053평)
◇ 건립비 : 300억원 (재단 200억원, 정부 100억원
◇ 건립기간 : 2004. 4~2006. 5 (개교 : 2006.8월)
◇ 학생수 : 700명(영어 500명, 독일어 200명)(장기적으로 1,000명)

지방의 경우에는 입학수요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기존학교의 증·개축, 권역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학교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경남 진사공단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하였다. '03.12.5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시설비의 일부를 경남도와 사천시와 함께 지원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외국인학교 건립을 지원한 최초의 사례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365명 정원으로 '04. 4월 개교하며,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기숙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경남 남부지역의 외국인학교 입학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 건립개요>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남면(진사외국기업전용단지인근)
◇ 부지규모 : 건평 1,026평 (총면적 24,60평)
◇ 건립비 : 56.8억원(설립자 32.5억원, 중앙/지방정부 24.3억원)
◇ 건립기간 : 2003. 3~2003. 12 (개교 : 2004.4월)
◇ 학생수 : 365명(유·초·중·고 15학급)

앞으로도 대구·구미권 등 외국인학교 입학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권역별 거점지역의 외국인학교 설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설립 후 3년이내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이 어려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3.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투기업의 가장 큰 투자애로요인으로 노사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03년도 외국인투자기업(지분율 50%이상 기준)의 노사분규는 총 32건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전체 노사분규 320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투기업 노사문제는 국내 노동 제도와 관행에 대한 생소함과 인식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며, 외투기업 노사분규는 1건만 발생 해도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사문제는 노사당사자간 자율 해결이 원칙이나,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차원의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03년 12월 Invest KOREA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Invest KOREA에 노사관계지원반을 신설하였다. 노사관계지원반은 노동부 파견관 3인, 공인노무사 2인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외투기업 노사문제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외투기업 노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외투기업 CEO 대상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국내 노동제도와 관행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있으며, 외투기업 노사협력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외투기업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 방문, 노동부, 검·경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외투기업 노사분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노사제도와 관행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노조대표의 투자유치 활동 동참 등 노사가 함께하는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외국인투자가의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제 5 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투자정책과 사무관 박상희

1. Invest KOREA 출범

2003.12.5 투자유치기관의 투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중점관리하기 위하여 Invest KOREA가 출범하였다. 과거 KISC때와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다.

<표 III-5-12> 투자유치조직 강화 내용

	KISC	Invest KOREA
단장	KOTRA 이사	외국인 (Alan Timblick)
조직	·투자단계별 유치조직 - 투자전략, 홍보, 유치	·산업별 유치조직 - 투자전략 -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 산업 ·PM중심의 유치지원체제 - PM제도 외촉법시행령에 제도화
인력	·총원 : 78명 - 공무원 파견: 8개 기관 10명 - 민간전문가 : 19명 - KOTRA : 38명 등	·총원 : 91명 - 공무원 파견: 13개 기관 17명 - 민간전문가 : 27명 - KOTRA : 38명 등
유치예산	'03년 87억원	'04년 123억원(IK·산자부)
포상금	없음	'04년 2억원
전문 인력 양성 제도	없음	·PM요원 양성과정(3개월) - 년 2회, '04. 2월 1기수료 ·FDI 전문대학원(2년) - '05년 개설, 2개 대학 100명

2. FDI 전문 인력 양성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인력 부분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보유한 우수 인력이 배양될 때,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외국인투자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대통령과 투자유치담당공무원과의 대화('03.10.30)에서 제기된 투자유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마련 및 시행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외국인투자 인력 교육은 현재 부분적으로 각 지자체의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사의 수준, 적절한 강의 교재의 미흡 등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의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외국투자가에 대한 상담 및 One-stop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가. FDI 전문 대학원

FDI 전문 인력 양성을 유망 대학과 연계하여 투자경영 석사(MIBA : Master of Investment Business Administration)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국내외 실물투자 전문가로서 정부부문의 PM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부문의 전문인력으로 진출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 과정도 Inbound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Outbound 투자, 남북경협, 지역혁신 전략사업까지 포괄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과목은 가급적 영어 수업으로 진행하여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교육대상은 일반인, PM 대상자 등 연간 100여명을 계획하고 있고, 수료자에 대하여는 Invest KOREA,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인턴쉽 기회 및 외투 담당자로 우선 채용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04년 5월 현재 동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2개의 대학원(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지정되어 현재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커리큘럼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실제로 신입생 선발은 '04년 9월 전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나. PM 전문과정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서비스 구현을 위해 도입된 PM제도의 신속한 정착 및 효과성 있는 PM의 역량 발휘를 위해 PM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현재 Invest KOREA 소속직원 및 파견공무원 50여명이고, 교육기간은 연 2회로 보통 3개월 기간에 걸쳐 총 1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M에 대한 주요 교육 내용은 투자유치 업무에 필요한 중

급 재무회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상기법, 관련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을 전자정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를 동북아 시대의 선도 국가로 만들자는 취지이다. 특히, 국가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경쟁국보다 빠른 투자 정보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결부되어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할 과제이다.

실제로 투자유치업무를 보면, 투자 유치 관련 절차, 상담·컨설팅, 제도적 지원 사항, 투자 애로 해소 등의 서비스가 Invest KOREA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행정처리, 사후 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정보 DB 및 컨텐츠의 부족과 질적 미흡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에 분산된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 KOTRA 및 FDI 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e-러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 차원의 투자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투자환경, 인센티브, 투자절차, 경제정보, 투자마켓 등 각종 투자정보를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셋째, 외국인들이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시행중인데,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나 각종 콘텐츠들을 투자포탈 사이트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올해는 BPR/ISP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 6 절 고객지향적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의 전개

투자진흥과 사무관 여한구

1. 외자유치 경쟁의 가속화

바야흐로 세계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인식하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정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 지역에의 직접 투자를 고려할 시에 인근 국가들의 기업환경 및 정부정책을 동시에 고려하며, 구체적인 협상단계로 들어갈 때는 각국 정부로부터의 입지, 세제 등의 지원 패키지를 함께 고려함에 따라 유수 다국적 기업의 유치는 그 어느때보다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한국에의 투자 결정시 중국이라는 매력적인 시장과 함께 비교를 함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의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표 III-5-13> 한·중 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 국	69.7	88.5	155.4	152.2	112.9	91.0	64.7
중 국	452.6	454.6	404.0	407	469	527.4	535

2. 우리의 강점을 살린 수요자 중시의 마케팅 전략

이와 같이 점차 치열해지는 인접국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활동 경쟁에 있어서는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강점(Selling points)을 부각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역내의 외국인투자 유입 유형을 분석해 보면, 중국은 원가절감과 거대한 내수시장,

한국은 기술집약적 산업과 우수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홍콩·싱가폴은 금융·서비스 등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분석되며, 실제로 외국인직접 투자는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우수한 생산 및 연구 인력과 월등한 IT 인프라 등 제반 인프라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품·소재, R&D 센터 및 IT·BT 신기술 분야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IT,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고, 향후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연계하여, 수도권에는 IT·BT 등 신기술 산업 및 R&D 센터, 동남권에는 자동차, 기계, 조선 부품·소재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부산, 인천, 광양)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금융, 물류, SOC 및 관광분야의 투자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항공기부품, 국제 특송 및 복합운송 분야, 온산항(울산) 및 광양항에는 다국적 물류회사의 유치를 추진중에 있다. 특히, 물류분야에 있어서는 운송과정의 부가가치 창출활동(footloose) 유치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3. 구체적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유치활동 추진

정부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하에 외국인투자 유치 기회를 적극 세일즈하고 있다.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업종별·국가별·프로젝트별로 입체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한해동안 구주, 일본, 싱가폴, 북미, 미국 동부 및 서부 등지에 BT, 자동차 부품 등 업종별로 전문화된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했으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업종별 세미나 및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관련 산업의 전문가들과 중·장기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서도 개별 기업과의 협조하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정 다국적 기업의 국내 투자 의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시, CEO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주선하는 한편, 투자은행, 컨설팅펌,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전문가로 외국인투자자문 그룹을

구성하여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잠재 투자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홍보 및 IR 활동에 있어서도 비즈니스 감각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 컨설팅펌 등과의 업무계약을 통해 종전의 공급자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을 수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별로 차별화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잠재 투자가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각종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시 정부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I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 7 절 국제투자협력

투자정책과 사무관 이선미

1. 개 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투자행위는 투자대상국의 생산, 고용, 무역, 기술진보 등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웬만한 국가의 연간 국민총생산액을 능가할 정도로 크며, 본사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보다도 해외매출액의 규모와 종업원 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발빠르게 국경을 이동하는 국제투자행위자는 환경, 노동, 소비자 이익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ies)이 결여되어 투자대상국에 부정적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확대·강화되고 있다.

또한, WTO는 다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일방주의 또는 지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국가간 차별대우를 금지하기 위해 각종 투자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APEC 역시 여러 채널을 통해 WTO의 다자주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간 투자원활화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국제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특혜적 성격의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등 지역주의의 확산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일방적으로 차별함으로써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어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국제투자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04.9부터 OECD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자본이동및경상이전무역외거래위원회(CMIT :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가 합쳐져 투자위원회로 활동하게 된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완료됨으로써 CIMIT의 역할이 약화되었고, 자본이동과 국제투자간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투자 논의를 중심으로 양 위원회가 통합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기존의 CIME는 매년 4, 9, 12월 3차례 열려 국제투자현황 및 정책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왔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경쟁(policy competition)의 폐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발전 편차를 투자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모색, 국제투자규범(특히 최혜국대우 원칙적용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별도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운용을 위한 작업반회의를 열어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76년 제정되어 '00년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이행절차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매년 6월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회원국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연락사무소(NCP)가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분석하는 NCP 연례회의(NCP Annual Meeting)를 개최한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에서 환경, 부패방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3.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s) 운영

'98년 OECD 차원에서 진행되던 다자간 투자협상(MAI: Multination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결렬되면서 차선책으로 '00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대폭 개정되어 국제투자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경쟁, 조세, 과학 기술,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등 광범위한 기업윤리 분야를 포괄하여, 다국적기업이 활

동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사회와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00년 개정으로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는 기업행위를 한 경우 해당 국가 NCP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NCP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회원국간의 자발적 성격의 약속이므로 NCP가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강제적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순 없다.

한국은 '01년 NCP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NCP 구성 및 활동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산자부 홈페이지내에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 산자부 차관)가 NCP로 지정되었으며, NCP 사무국은 산자부 투자정책과로 지정되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신고가 14건,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관련 신고가 1건 접수되었다. 이중 과테말라 1건, 스리랑카 7건, 인도네시아 3건, 멕시코 1건 등 총 12건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말레이시아 및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 2건이 접수기각 처리되었고 한국에 진출한 네슬레社건도 처리 완료되었다.

4. APEC 투자전문가회의(IEG: Investemnt Expert Group)

'80년대 말 UR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U, NAFTA 등 지역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정부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98년 APEC이 출범하게 되었다. APEC내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산하에 투자전문가 회의 역시 아·태지역내 투자원활화 및 경제협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IEG는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며, WTO의 다자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

IEG는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을 주된 정책 수단으로 한다. 개별실행 계획은 회원국이 투자자유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유화 계획안에 대해 매년 검토회의를 실시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한국: '03년 IAP 검토받음).

한편, 공동실행계획을 통해 '03년의 경우 IEG는 투자가이드북 제5판 개정판 발간, 국제투자규범 및 그 법적 해석에 대한 세미나 개최, 한국, 중국, 홍콩 국경간 M&A 사례연구(한국 서울대 문휘창 교수 수행), 투자자유화 및 Business 원활화를 위한 Menu of Options 이행현황 보고 등의 성과를 실현했다.